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8,366,638	20,350,999
일반회계	576,341,444	17,290,243
특별회계	102,025,194	3,060,756
공기업특별회계	73,753,834	2,212,615
상수도사업	19,909,756	597,293
하수도사업	53,844,078	1,615,322
기타특별회계	28,271,360	848,141
의료급여기금	1,916,590	57,498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11,243	3,337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126,108	3,78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211,096	36,333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2,413	7,57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53,074	7,592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80,812	2,424
수질개선관리	5,753,161	172,595
농공지구조성	4,403,471	132,104
중소기업육성자금	5,616,909	168,507
보건진료	2,047,981	61,439
농업발전기금	6,498,502	194,95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84,037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6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